

|| 경영학과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교육목적 |

경영학과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경제와 기업환경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유연하며, 윤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교육목표 |

1.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를 양성한다.
2. 건강한 기업 환경, 산업 사회, 경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경영 전문가를 육성한다.
3.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두의 상생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를 양성한다.

| 내 규 |

제1조 (전공) 본 학과의 전공은 경영학(경영학 일반) 전공을 둔다.

제2조 (입학)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제3조 (교육과정)

- ① 본 학과는 상기한 전공에 대하여 세부 전공 없이 (경영학 일반) 박사과정만을 운영한다.
- ② 경영 및 유관 전공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받지 않은 입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과목의 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전공 학사 혹은 석사학위자라 하더라도 전공과 관련 없이 경영학 관련 유사 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서 선수 과목의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아래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기당 수업은 전일제 학생(full-time student)인 경우 최대 12학점, 전일제 학생이 아닌 경우는 최대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은 별개로 한다.

1. 박사과정은 대학원 공통 6학점,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2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대학원 공통 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로고스경영과윤리, 크리스천리더십)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 분	박사과정
대학원 공통	6
전공필수	3
전공선택	27
논 문	P
합 계	36

제5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제6조 (종합시험)

- ①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 ② 박사과정의 시험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전공 분야의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과목으로 한다.

제7조 (학위논문)

- ① 지도교수와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 ②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전까지 게재학술지의 이름과 상관없이 한국연구재단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지에 2편 이상이나 WoS(SSCI, SCI, SCIE) 혹은 SCOPUS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은 학생이 제1저자 혹은 공동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해야 '논문' PASS로 인정한다. 박사과정 편입생이 경우 전적대학에서 박사과정 재학 기간 중에 위의 기준에 맞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실적이 있을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서 논문제출 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도교수의 선정은 2차 학기에 학생이 관심 논문 주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면 대학원 학과 회의를 통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편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에 학과장에게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한다.
- ④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과 회의를 거쳐서 본 대학원 경영학과 정년직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위 논문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단, 연구년(해외 대학)에 해당하는 교내 및 교외 교수는 논문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없으나, 국내 대학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수는 학과 회의를 거쳐서 논문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다.

제8조 (대학원 경영학과위원회)

- ① 목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각 학과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경영학과위원회를 둔다.
- ② 구성: 대학원 경영학과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기능: 대학원 경영학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및 심의, 의결한다.
 - 1.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본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정
 - 3.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 4. 입학사정 및 졸업사정
 - 5. 논문지도 제반사항
 - 6.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 7.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8. 장학생 선발
 - 9. 학과운영예산
 - 10. 강좌평가, 자료개발 및 제작
- ⑤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 (원우회) 학생들의 연구 및 협력을 도모하는 자치기구인 경영학과 원우회를 둘 수 있

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 부 칙 |

1. 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정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 경영학과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내규는 2019학년도 입학생(박사과정 개설)부터 적용한다.
3. 본 내규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